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 록 번 호 : 20140834

최초 등록일 : 2014.09.04.

최종 등록일 : 2024.01.09.

0129kmk@naver.com

오늘의치킨

정 보 공 개 서

(주)빅토리어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빅토리어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83길 34, 3층 (반포동, 나우빌딩)

[대표 전화번호] 1588-6069 [대표 팩스번호] 02-456-8125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1588-606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빅토리어스	오늘의치킨 외 2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83길 34, 3층 (반포동, 나우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08.17	2011.08.17	손우빈	1588-6069	02-456-8125
	법인등록번호	110111-4669549	사업자등록번호	214-88-8286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손우빈	오늘의치킨 외 2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83길 34, 3층 (반포동, 나우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손우빈	1588-6069	02-456-812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리치메이커	청춘싸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7, 6층 (서초동, 대원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원우	1588-8927	02-3445-8928
	법인등록번호	110111-4564658	사업자등록번호	211-88-58298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리치메이커	청춘싸롱	2023.1.19.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7, 6층 (서초동, 대원빌딩)	정원우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명 칭	오늘의치킨	
상 호	오늘의치킨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제 40-2023-0124399 호



그 밖의 영업표지	-	
-----------	---	--

5.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VAT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879,018	760,715	2,118,303	5,617,328	950,955	933,480
2022년	5,090,889	1,272,356	3,818,532	6,520,725	1,980,694	1,700,229
2023년	6,744,968	1,102,820	5,642,148	6,088,344	2,171,683	1,823,61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만을 전개하고 있어, 5.-1) 표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2023년 당사는 [오늘의치킨, 훈노리, 최고당 돈가스]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전개하였으나, 각 브랜드 별 매출액 추정은 어렵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임원	손우빈	사내이사	2011.08.~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빅토리어스	가맹사업 경영	2011.08 ~ 현재	훈노리 (등록번호:2009010001) 라는 영업표지의 퓨전포차사업
			2017.07 ~ 현재	최고당 돈가스 (등록번호:제20171226)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당사 대표자)	서귀포로맨스 / 손우빈	가맹사업 경영	2021.3 ~ 현재	서귀포로맨스 (등록번호 20211778)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2023.9 ~현재	삼단분식(등록번호 20213431)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사용기간)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범위내 사용	등록일자 : 2023.07.12.	출원번호 : 40-2023-0124399	(주)빅토 리어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당사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까닭에 관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4.09.23.
당 가맹사업의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4.09.23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리치메이커	청춘싸롱	손우빈	2014.09.~2014.1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68길 21-1, 2층(신사동)
(주)리치메이커	청춘싸롱	오정열	2014.10.~2021.0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7, 6층 (서초동, 대원빌딩)
(주)리치메이커	청춘싸롱	정원우	2021.04~2023.0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7, 6층 (서초동, 대원빌딩)
(주)빅토리어스	청춘싸롱	손우빈	2023.01~2023.0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83길 34, 3층 (반포동, 나우빌딩)
(주)빅토리어스	오늘의치킨	손우빈	2023.08~현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83길 34, 3층 (반포동, 나우빌딩)

▶ 당사는 2014년 청춘싸롱 브랜드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23년 8월부터 오늘의치킨 브랜드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 (주요 상품)
오늘의치킨	치킨	순살치킨, 양념치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	6	-	5	5	-	3	3	-



서울	3	3	-	3	3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1	1	-	1	1	-	-	-	-
전남	1	1	-	1	1	-	-	-	-
경북	-	-	-	-	-	-	1	1	-
경남	1	1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는 2023년 8월부터 오늘의치킨 브랜드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9	-	-	3	-	6
2022	6	-	-	1	-	5
2023	5	3	-	5	-	3

▶ 당사는 2023년 8월부터 오늘의치킨 브랜드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빅토리어스	꾼노리	2009010001	주점	15/-	13/-	8/-
		최고당 돈가스	20171226	기타외식	121/-	145/-	148/-
특수관계 인 (당사 대표자)	서귀포로맨스 /손우빈	서귀포로맨스	20211778	주점	-	-	-
		삼단분식	20213431	분식	-	-	1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3	-	-	-	-	-	-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2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1	-	-	-	-	-	-	5곳 미만
경남	-	-	-	-	-	-	-	
제주	-	-	-	-	-	-	-	

▶ 당사 가맹점 3곳 모두 2023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유의미한 매출액 추정이 어려우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오늘의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오늘의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	10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3년 [오늘의치킨, 최고당 돈가스, 끈노리]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광고 및 판촉비 사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9-1])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98,543	98,543	-	

광고	비공개	비공개	98,543	98,543	-	비공개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빅토리어스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 개월 소요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본사 지정 업체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3,3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1.가입비 2.상표 및 상호 사용료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의 대가 4.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교육비	2,2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교육 실시 이전 계약 시 위약금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시작 후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물품보증금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가맹비	3,300	
교육비	2,200	
물품보증금	없음	본사지정협력사와 별도계약체결
합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66㎡[구2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59,200	2,960			66㎡ (20평)기준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가맹본부	33,000 (철거, 전기승압, 화장실공사, 소방완비, 간판, 파사드, 어닝, 음향, 냉난방 등 별도)	1,650	협의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기물 및 집기	가맹본부	17,600	880	협의		
의탁자	가맹본부	3,600	-	협의		
홍보 판촉물	가맹본부	1,700	-	협의		
최초 공급상품	협력업체	1,800	-	협의		
디스플레이	가맹본부	1,500	-	협의		
키오스크	협력업체	임대	-	협의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 간판, 철거, 전기증설, 냉난방기, 가스, 정화조, 화장실, 외부상하수도, 외장추가, 소방공사,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관리감독의 대가로 3.3㎡ 기준으로 330,000원(vat포함) 어 공사 시작 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점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220]	매월 5일(선불)	-	수수료	상권 및 입지에 따라 내규에 의해 책정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100% 가맹점사업자 0~50%	-	-	-	전체 가맹점 균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협의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책임보험, 화재보험	미지정	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협의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제외한 나머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방제 용역비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 결제 연체 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기준 :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표지에 대하여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는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상기의 사유로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영업표지가 부착된 품목과 기타 가맹점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하여 당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은 귀하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및 양수인의 매장 오픈 지원에 대한 행정적 실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오늘의치킨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공급된 원·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당사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그리고 하자 있는 원·부재료 등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합니다	제32조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기 리스트는 점포의 상황이나 경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의 공급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이나 당사의 노하우가 제품화된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강제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단위: 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오늘의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오늘의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오늘의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3] 참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주류 1)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3] 참고		변동 시 별도 공지	정보공개일 기준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 전문점	오늘의치킨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도로를 따라 도보 3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후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별다른 제한이 없음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자동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7조
1. “을”이 “갑”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갑”이 “을”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25조 각호 및 31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31조 3항 및 4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신규 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교육비 등 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및 양수인의 매장 오픈 지원에 대한 행정적 실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계약을 원할 경우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인테리어 및 설비 구입 제외)으로 가맹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교육을 받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상기 절차 참조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오늘의치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당사의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	당사는 경업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가맹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당일 11:30 ~ 22:00	연중무휴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 및 브랜드광고	50%	50% (모든 가맹점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TV, 라디오, 신문, 협찬등),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75%	25% (모든 가맹점 균분)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		
판촉 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산정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행사에 따라 산정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가맹점별 부담금 확정·납부 → 행사 시행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0조 6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7조

- ①“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 내지 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3조

- ①“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삼천만원(W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을”이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삼백만원(W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을”이 제35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오늘의치킨’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W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W300,000원)씩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위약금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부가세 포함, 기준: 66㎡[20평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문의	- 전화문의,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정보공개서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7)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납입(서울보증보험 증권발행)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 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1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2일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25일	
기자재 및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2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7일~10일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 - 오픈행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1조 (분쟁의 해결)
①“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갑”의 임직원 포함)과 “을”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한다.
②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최초 가맹금에 합산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특별/재교육	협의	조리교육 서울·경기(W150,000) / 그 외 지역(W200,000)	1인 기준 (교통비, 재료비 등 실비 별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가맹점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입니다. 그에 따라 가맹점의 참석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자의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사교육에 불참할 경우, 교육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사의 승인을 얻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기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본부 지정 주방기물 및 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2] 가맹본부 지정 원부재료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가맹본부 지정 판매상품 목록



오늘의 세트

나만의 혼·치세트 한 마리 [기본: 순살] + 새우볼/치즈볼 택1 + 콜라 500ml → 16,400 → **15,500**
ONE&ONE 두마리세트 두 마리 [기본: 순살+양념] + 콜라 500ml 25,800 → **24,500**

※ 기본(순살, 양념)으로 선택시 세트가격입니다. 다른 치킨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다른 치킨으로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일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콤비

한통에 여러맛!



한통에 2가지 맛



한통에 3가지 맛



한통에 4가지 맛

치킨 단품메뉴 중 마음대로
2~4가지 선택!

15,900 ~ 18,000

※ 순살, 치폴레, 로제, 와사비마요, 청양마요 제외 ※

오늘의 치킨

요일마다 할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일의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라치킨	달마치킨	파.타.코 치킨	레드청양 치킨	리얼대파 크림치킨
13,900 13,000	13,900 13,000	13,900 13,000	13,900 13,000	14,900 14,000	13,900 13,000	14,900 14,000

메인

오늘의 순살치킨 9,900	★ 파.타.코치킨 ★ 14,900	내일의 양념치킨 13,900	간장치킨 13,900	달마치킨(해니갈릭) 13,900
마라치킨 13,900	마그마치킨 13,900	레드청양치킨 13,900	리얼대파크림치킨 14,900	만풍치킨 14,900
스윙콘소메치킨 14,900	뿌링푸레이크치킨 14,900	치폴레치킨 12,900	로제치킨 12,900	와사비마요치킨 12,900
청양마요치킨 12,900				

사이드

양념감튀	4,500	통안심스틱	4,500	등심돈가스	8,900	오늘의 쫄면	5,500
치즈앤칩스	5,500	모짜치즈볼	5,500	치즈돈가스	9,900	오늘의 떡볶이	4,500
새우볼	4,500	크림치즈볼	5,500				

음료

콜라 500ml	2,000	사이다 500ml	2,000
----------	-------	-----------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_____.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_____.

(가맹계약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_____.

(가맹계약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별첨 8]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